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: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: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구조 및 치수(제3조제9호 및 제10호)

나. 용기, 내부용적 및 충전비(제4조, 제5조제3호 및 제4호)

다. 내식시험(제7조제2항,제3항)

라. 방사시간 및 간헐방사시험(제8조제2호, 제8조의2)

마. 온도반복시험 및 고온노출시험(제10조, 제10조의2)

바. 폐쇄압력 관련, 진동시험(제11조제2항제4호, 제12조)

사. 흡습률시험 및 온도상승시험(제14조제1항제4호, 및 제9호)

아. 절연내력시험 및 금속부식시험(제14조제1항제10호, 제14조제2항제3호)

자. 수소이온농도(제14조제2항제8호)

차. 금속부식시험 및 수소이온농도(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5호)

카. 명판시험(제15조제2항)